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- 호

『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2월 17일

중소기업청장

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□ 문화펀드 운용사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운용사(GP)와 출자자(LP)간의 불합리한 협약 체결이 관행처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

- (협약 내용) LP가 출자의 조건으로 GP에게 일정 금액을 LP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에 투자(일명 전략적 투자)토록 의무화*

* 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 참투조합의 '선관주의 의무' 위반 소지(법률 자문 결과 명확한 선관주의 위반은 조합 재산의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어야 함)

□ 이러한 협약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바,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추진

2. 관련근거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7조제2항

3. 주요내용

- 업무 협약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 (안 제4조제15호)
-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간의 협약 체결 방식과 범위 규정 (안 제30조제6항)
 - 협약 내용은 협약 체결 및 변경 전에 모든 유한책임조합원에게 공개 및 승인되어야 함
 -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 협약서 따른 투자를 집행할 경우 이를 심사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함
 - 조합의 누적투자액 대비 업무 협약서에 따른 투자금액의 비율은 전체 출자금 대비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(벤처투자과)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내용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- 제출처 : 중소기업청(벤처투자과)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 - 우편 : 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문산동)
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
 - 팩스 : 042-481-4418
- 문의 :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(042-481-4422)
-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용어의 정의) 1. ~ 14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용어의 정의)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<u>“업무 협약서”라 함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간에 규약 이외에 체결한 모든 종류의 계약을 말한다.</u>
제30조(투자의 방법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0조(투자의 방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과 조합의 투자 내용 및 대상에 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 1. <u>협약 내용은 협약 체결 및 변경 전에 모든 유한책임조합원에게 공개 및 승인되어야 한다.</u> 2. <u>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 협약서 따른 투자를 집행할 경우 이를 심사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	<p>3. 조합의 누적투자액 대비 업무협약서에 따른 투자금액의 비율은 전체 출자금 대비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